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정 1988. 3. 1.

제61차 개정 2025. 7.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에 의거하여 설치한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2. 특수대학원 :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사회융합대학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교육대학원 (개정 2008.9.9., 2011.4.19., 2017.12.20., 2018.10.19.)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또한 2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17.)

② 일반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 신설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하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실적 및 저술 실적, 예체능 계열의 실기활동 등의 실적, 지식재산권 등록 실적의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은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이하 박사학위 설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4.24.) (개정 2025.1.6.)

1. 인문·사회 계열 : 교육부장관 고시로 제정한 박사학위 설치 규정상 실적이 2편 이상일 것
2. 예·체능 계열 : 교육부장관 고시로 제정한 박사학위 설치 규정상 실적이 2편 이상일 것
3. 자연과학·공학 계열 : 교육부장관 고시로 제정한 박사학위 설치 규정상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③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2024.4.24.)

④ 각 대학원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9.9., 2024.4.24.)

⑤ 일반대학원에 정원외로 개설하는 외국인 유학생 석·박사과정은 집중이수제로 운영하며, 수업은 원칙적으로 이중언어로 진행한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0.17.) (개정 2024.4.24.)

제3조2(다전공) ① 각 대학원에 다전공을 둘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다전공은 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등을 말한다. (신설 2024.12.17.)

제4조(각 대학원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일반대학원에 두는 학위 과정별 학과와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8.9.9., 2009.4.23., 2010.7.6., 2011.4.19., 2011.9.15., 2011.10.11., 2012.12.17., 2016.10.10., 2017.12.20., 2019.5.7., 2019.10.8., 2021.4.28., 2021.9.23., 2021.12.22., 2022.10.17., 2024.4.21., 2025.1.6., 2025.7.28.) (변경 2014.4.3.)

② 특수대학원에 두는 각 대학원별 학과(전공)와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8.9.9., 2009.4.23., 2010.7.6., 2011.4.19., 2011.9.15., 2011.10.11., 2012.12.17., 2016.10.10., 2017.12.20., 2018.10.19., 2020.9.25., 2021.2.16., 2021.4.28., 2021.9.23., 2021.12.22., 2022.6.13., 2022.10.17., 2024.4.1.) (변경 2014.4.3.)

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3조 제5항에 따라 운영하는 외국인 유학생 석·박사과정의 학과·전공은 [별표1의 3]과 같다. (신설 2022.10.17.) (개정 2024.12.17., 2025.1.6.)

제2장 입학 및 등록

제5조(입학전형 및 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하며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며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실시한다. 단, 입학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1., 2012.5.1.)

제6조(입학자격) ①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2.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전항의 자격에 준하며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편입학 및 재입학) ①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계열의 학과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편입학 운영 내규로 정한다.

②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0.8.)

제8조(입학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대학원학칙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전형방법) ① 각 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입학지원 서류와 전공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하는 일반전형과 입학지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하는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개정 2022.10.17.)

② 특별전형, 일반전형의 무시험, 전공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7.)

③ 이 규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위탁생 및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형방법에 의하여 입학전형 외로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2.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제11조(입학제한) 본교 전임교원(조교제외)은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은 휴직기간으로 처리한다.

제12조(입학전공분야) 입학전공분야가 다른 각호1의 석·박사 비 동계 지원자에 대하여도 입학을 허가하되, 입학 후에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지정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추가지정과목의 이수학점은 석·박사과정의 이수 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학부의 전공과 다른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
2. 석사의 전공과 다른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

제13조(등록) ① 신입생은 지정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와 함께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업연한 이내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 한자로서 그 학점이 3학점 이하일 경우 학점등록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이미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에 의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14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과목으로 하고 소정의 기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신청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장 학적변동(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제15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전 소정기간 내에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휴학

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정기간이 아니더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4., 2019.5.7.)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되 계속하여 4학기까지 할 수 있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1학기에 한하여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병역 또는 임신, 출산 및 육아(만8세 이하 자녀)로 인한 휴학기간과 일반대학원의 고시장학생 등은 전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산 및 육아 사유 휴학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5.7.)

④ 제2항의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제16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조의 휴학기간을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

제17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 (개정 2007.5.14.)

제1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 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제4장 학사운영

제1절 학년도 ·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9조(학년도 및 학기) ① 각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기는 2개 학기로 하되 각 학기는 학사력으로 정한다. (개정 2025.7.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연학기를 허가받은 전공 · 학위과정은 3개 학기 이상으로 학기를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7.28.)

제20조(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이상(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17.)

② 일반대학원은 주간에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수업을 실시함을 원칙하되, 주간, 야간, 주말, 계절,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21조(휴업일) ① 각 대학원의 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삭제 (2020.9.25.)
 4. 국정공휴일 및 일요일 (개정 2020.9.25.)
 5. 근로자의 날 (개정 2020.9.25.)
 6. 기타 총장이 임시로 정한 휴일 (호 신설 2020.9.25.)
- ② 휴업일인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시험·실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제22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국립공원학과<계약>는 3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8.1, 2018.5.25.)
- ③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사회융합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사회복지정책대학원은 2년 6월)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7.11, 2011.4.19., 2018.5.25., 2020.9.25.)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원 정원외로 개설하는 외국인 유학생 석사과정은 학칙이 정하는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학칙 제34조 학위수여자격 중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이상 정규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6개월(1개 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 편입한 자는 수업연한 단축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학과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신설 2025.1.6.)
- ⑤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 재학기간 중 취득한 전공학점을 통산하여 재산정한다. (개정 2025.1.6.)

제3절 교육과정 및 성적·학점 및 수료

- 제23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 수업관리 운영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2.12.17)

- 제24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F	69이하	0

- ②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 ③ 합격, 불합격만을 표시할 교과목은 S,P(합격), U,N-P(불합격)로 표시하고 점수, 평점으로 계

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학점)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일반대학원은 1과목당 3학점, 특수대학원은 1과목당 3학점 이내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2020.9.25.) (변경 2014.4.3.)

② 수강과목의 출석률이 강의 실시기간의 4분의 3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2.0)학점 이상이면 이수 학점에 가산된다. 그러나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총 평점평균 3.0(B 학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2.12.17.)

③ 논문연구학점을 제외한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 학생중 아래의 호에 해당할 경우 학점 초과 신청 및 학점등록을 면제한다. (개정 2007.7.11., 2009.12.21., 2010.6.17., 2011.4.19., 2011.10.11., 2018.5.25., 2020.9.25.) (변경 2014.1.24.)

1. 교직 이수(예정)자에 한하여 3학점까지 초과 신청 (호 신설 2014.1.24.) (개정 2020.9.25.)

2. 부전공 이수(예정)자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에 대해서만 2학점까지 초과 신청 (호 신설 2014.1.24.)

④ 학위논문, 논문연구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논문, 논문연구학점 인정에 관한 운영내규로 정한다.

⑤ 규정된 학점 외에 3학점까지 초과 신청 할 수 있으나 지도교수 및 주임(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과 신청한 학점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제25조의2(합동군사대학의 학점인정) ① 학점인정대상은 합동군사대학의 육군대학·해군대학·공군대학의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합동참모대학의 합동고급과정 수료자로 한다.

② 학점인정범위는 제1항의 대상자가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안보학과에 입학할 경우 고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최대 졸업학점의 4분의1(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은 1학기(6개월) 단축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대상자가 합동군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입학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에 대해 학과에서 작성한 학점인정원을 대학원에 제출하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0.19.) (개정 2024.10.24.)

제25조의3 삭제 (2024.10.24.)

제25조의4 삭제 (2024.10.24.)

제26조(편입생 및 재입학 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학생의 원 전적대학(원)에서의 취득학점 중 편입학 학과(전공)의 교과목과 유사교과목의 학점이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 편입학 운영내규로 정한다.

②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가 각 학위과정의 동일학과 및 전공에 재입학하였을 경우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제27조(타 대학원간의 학점인정) ①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성적증

명서를 제출하여 주임(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은 타 대학교 대학원과의 학점 상호 인정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학·군 제휴 협약에 가입한 대학은 석사과정 12학점까지 학점교류를 인정하며, 강원도내 대학원 간 전공과목 및 선택과목을 통해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강원도 내 학점교환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1.)

제28조(비동일계의 추가이수학점) 이 규정 제12조에 의해 입학한 비동일계 출신자의 경우 이 규정 제29조에서 정한 수료 학점 이외에 추가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추가이수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추가이수과목에 대한 운영내규로 정한다. (개정2018.10.19.)

제29조(학위과정의 수료인정)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이상(대학원 한의학과는 27학점이상, 사회복지정책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36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③ 삭제 (2021.4.28.)

④ 각 과정별로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일로 하며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절 전과 및 전공의 변경

제30조(전공의 변경) ① 전과(전공변경포함)를 허가하는 시기는 입학 후 1개 학기 경과 후에 2 학기생에 한하여 학기 초 30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학점은 새로운 전공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06.8.1.)

② 각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원내에서 학생의 전과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속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구 전공 주임(지도)교수의 승인이 확인된 전공변경신청서
2. 이수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

제5장 자격시험

제31조(자격시험의 종류)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32조(자격시험)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

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학위청구논문

제33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및 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는 4학기 이상(사회융합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사회복지정책대학원은 5학기,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의 합동군사대학 학점인정 시 3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대학원 한의학과는 27학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36학점)이상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 (개정 2008.4.24., 2009.12.21., 2011.4.19., 2018.5.25., 2019.5.7., 2020.9.25.)
 2. 박사학위는 4학기 이상(국립공원학과<계약>는 6학기) 등록하고 36학점이상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 (개정 2008.4.24., 2018.5.25.)
 3.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4. 논문지도 교수를 배정받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개정 2008.4.24.)
 5. 외국어시험(특수대학원 제외)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8.5.25.)
 6. 제28조에 의해 추가이수과목을 이수한 자
-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학과 주임(지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 심사위원이 심사 및 구술 심사를 실시하며, 논문 심사위원의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인, 박사학위과정은 5인으로 한다. (개정 2025.5.14.)
-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학위수여

제34조(학위수여자격) ① 석·박사학위 수여 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②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전공영역교수 3명(지도교수포함),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전공영역교수 5명(지도교수포함)으로 구성하되, 본교에 전공영역 교원이 없을 경우 타 대학교 전공영역 전임교원(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소 연구위원, 예능계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도 가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1. 논문심사 신청자

- 가. 석사 일반학과(계약학과 포함)는 24학점 이상, 대학원 한의학과는 27학점 이상,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36학점 이상, 박사 36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 (개정 2008.4.24., 2009.12.21., 2018.5.25.)
- 나.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다. 자격시험(외국어시험(특수대학원 제외)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2018.5.25.)
- 라. 논문연구 과목을 이수하고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 (개정 2008.4.24., 2021.4.28.)

- 마.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 바. 학칙 제12조에 의한 비 동계지원 학생으로 추가이수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한 자
- 사. 기타 학위수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비 논문 학위취득 신청자

- 가. 석사과정의 각 대학원별 취득학점은 비논문학위취득운영내규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변경 2014.1.24.) (개정 2023.4.13.)
- 나.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다.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라. 수학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
- 마. 학칙 제12조에 의한 비 동계지원 학생으로서 추가이수학점(선수과목)을 이수한 자
- 바. 기타 학위수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5조(학위수여 및 구분) ① 각 대학원 학과(전공) 과정별 학위는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별표1]의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석사과정의 비논문 학위취득 운영 내규에 의거 학위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7.7.11., 2023.4.13.) (변경 2014.1.24.)

②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학위를 수여한다.

1. 일반대학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2.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전문학위) (변경 2007.3.2.)
3. 명예박사학위 : 학술학위에 준함

③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학위종별) 각 대학원 과정별 학위종별은 [별표3]과 같이 한다. (개정 2008.9.9., 2009.4.23., 2009.12.21., 2010.1.11., 2010.7.6., 2011.10.11., 2016.10.10., 2017.12.20., 2018.5.25., 2018.10.19., 2019.10.8., 2020.9.25., 2021.2.16., 2021.4.28., 2021.9.23., 2021.12.22., 2022.6.13., 2022.10.17., 2024.4.21., 2025.1.6.) (변경 2014.4.3.)

제37조(명예박사학위) ① 명예박사학위 수여 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1.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
2.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을 나타낸 자
3.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② 명예박사학위의 학위종별은 본 대학원의 학술학위에 준한다.

③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수여한다.

제38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실험대행, 논문대필·표절,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06.8.1.)

②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한다. 다만,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정규 학위 수여 일이외에도 할 수 있다.

제40조(학위기 양식) 학week기는 다음에 따라 작성 및 시행한다. (개정 2024.1.18.)

1. 학술학위(일반대학원 - 석사, 박사) - 별지 1 (개정 2019.5.7.)
2. 전문학위(특수대학원 - 석사) - 별지 2 (개정 2008.9.9., 2016.10.10., 2017.12.20., 2018.10.19., 2019.5.7.) (변경 2014.1.24.)
3. 전문학위(특수대학원 - 수업석사, 비 논문 학위) - 별지 3 (개정 2008.9.9., 2016.10.10., 2017.12.20., 2018.10.19., 2019.5.7.) (변경 2014.1.24.)
4. 명예박사학위 - 별지 4
5. 학술학위 및 전문학위(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석사 - 연구실적석사, 비 논문 학위) - 별지 5

제8장 학생지도 및 상벌

제41조(학칙준수) 각 대학원의 학생은 학칙과 각종 내규를 준수하고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제42조(장학금) 본교 재학연한 내 대학원생으로서 탁월한 재질과 성품을 갖추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지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5., 2019.10.8.)

제43조(포상) 본 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총장상 : 입학, 졸업성적 최우수자 및 졸업예정자중 전(全)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수여한다.
2. 공로상 : 재학자 및 졸업예정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대학원장이 수여한다.

제44조(징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대학원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각종 시험 부정행위 자

② 징계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과 대학원위원회 위원과 해당 학생이 속한 학과(전공) 주임(지도)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근신(근로봉사),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④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증거 제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징계절차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 학칙에 준한다.

제9장 공개강좌 · 연구생

제45조(공개강좌) ① 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소요되는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연구생) ① 대학원과정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과정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생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며, 이수학점은 대학원과정에 준하여 관리한다.

④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9.9.)

제10장 직제

제47조(대학원장 및 부원장) 각 대학원장 및 부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8.9.9., 2018.10.19.)

제48조(조직) ① 대학원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학원지원팀을 두며, 각 학과마다 필요한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9.)

② 학과(전공)별 소속교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전공영역 교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9.9.)

제49조(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각 학과(전공)에는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는 그 학과(전공)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9.9.)

제11장 대학원위원회

제50조(설치 및 구성) ① 본교에 설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08.9.9.)

제5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08.9.9.)

제52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9.9.)

1. 대학원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3. 학과 및 전공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4.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7. 각종 장학제도 운영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8.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학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3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9.9.)

제12장 계약학과 (신설 2010.6.17.)

제53조의2(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의3(정원) ① 계약학과의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1의 2]와 같다. (개정 2015.5.19., 2018.5.25., 2018.10.19.)

② 제53조의 4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제4조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의4(지원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에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할 수 있는자는 본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53조의5(납입금) 제53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53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의6(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다.

②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의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계약학과의 수업장소는 학교 또는 산업체에서 정한 교육장에서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동수업은 교육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18.]

제53조의7(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따른다. 단, 계약학과와 졸업이수 학점은 석사24학점, 박사36학점으로 하며,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 지침은 따로 정한다. (개정2018.5.25.)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의8(계약학과등의 운영) ① 계약학과등의 운영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회계 및 학사관리는 관련 대학원장이 수행한다.

② 계약학과와 효율적인 학사운동을 위하여 계약학과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대학원과 협약기관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 부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5.25., 2018.10.19.)

④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계약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학과별 관련 규정의 개정
2. 계약학과별 교육과정과 학과운영
3. 계약학과와 폐지와 학생 정원
4. 계약학과별 예산과 결산
5. 계약학과별 학생의 입학, 수료 및 졸업
6. 계약학과별 발전계획 등 중요한 사항

⑤ 계약학과와 총 예산은 학과별로 세부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대학원에 보고한다.

제53조의9(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가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관련학과(전공)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원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3장 보칙

제54조(세부 시행규정) 본 대학원 학칙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세칙 및 내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9.9.)

제55조(학칙개정) 이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개정(안)을 학교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통하여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대학원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 후 총장이 공포한다. 단, 이사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한다. (개정 2008.9.9., 2019.5.7., 2019.10.8.)

제56조(준용규정) ①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지대학교 학칙을 따른다.
② 이 학칙 시행으로 상지대학교 학칙 중 이 학칙과 상이하여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학칙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상지대학교 학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9.9.)

부칙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9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9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9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9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1학년도부터 축산학과 재적생은 응용동물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0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의 폐지) 이 학칙 시행과 동시 대학원 학칙, 경영대학원학칙, 행정대학원 학칙, 산업환경대학원 학칙, 교육대학원 학칙 및 각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은 폐지한다. 다만, 학칙통합으로 이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제 규정 정비 시 까지 종전의 상지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과 함께 폐지된 특수대학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에 대한 졸업 시 학위명 표기방법 교육과정 등은 종전 학칙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학칙 시행과 함께 종전 각 특수대학원에서 설치 운영하던 운영위원회는 폐지한다.

③ 이 학칙의 시행으로 폐지된 학칙 중 이 학칙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학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에서 변경된 학위 명칭은 2004학년도 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졸업자는 종전의 학위 명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은 2006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각 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1조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임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국제통상학과, 경제학과, 임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평화통일학과, 기능성전자소재학과,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산업환경대학원 산업공학과, 자원공학과, 전산학과, 테크노경영공학과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은 학과 폐지에도 불구하고 졸업시까지 학과 및 학위명칭 등은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③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대학원 전산정보교육 전공을 컴퓨터정보교육 전공으로 명칭 변경하며,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전산정보교육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은 컴퓨터정보교육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④ (특수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1조에 의하여 경영대학원 및 행정대학원은 사회복지·정책대학원으로, 산업환경대학원은 건설·환경정책대학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사회복지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부동산학과, 경제학과에 소속된 학생은 사회복지·정책대학원으로, 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에 소속된 학생은 건설·환경정책대학원으로 각각 소속을 변경한다.

⑤ (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1조에 의하여 학과간 협동과정 석사과정에 동서의료공학과를 신설하며,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과정에 경영정보학과를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8월부터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은 2007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특수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1조에 의하여 건설·환경정책대학원을 경영·산업대학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사회복지·정책대학원에 소속되었던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회계학과, 경제학과, 경영정보학과와 건설·환경정책대학원에 소속되었던 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를 경영·산업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정책대학원의 정원은 30명으로 경영·산업대학원의 정원은 30명으로 각각 조정한다.

③ (수업연한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1조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연한을 2년으로 조정하며,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은 수업연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시까지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다만, 휴학생이 복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해당학기의 수업연한을 적용한다.

④ (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1조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학과간 협동과정) NGO사회학과를 폐지한다. 다만,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은 학과 폐지에도 불구하고 졸업시까지 학과 및 학위명칭 등은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⑤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응용동물과학과를 동물생명자원학과로 명칭변경하며,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응용동물과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동물생명자원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칙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2항 2호에 의거 변경된 학칙은 2006학년도 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1조에 의하여 경영·산업대학원 석사과정에 관광학과를 신설하며 신입생은 2008학년도 전기부터 선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특수대학원에 평화안보대학원을 신설하고 안보학과와 군사학과를 두며, 신입생은 2008학년도 전기부터 선발한다.

②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특수대학원 평화안보대학원의 입학정원은 학과 간 협동과정서 5명, 경영·산업대학원에서 10명을 조정하여 총 15명으로 운영한다.

③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평화안보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재학연한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학기당 취득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특수대학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취득학점을 제한하고 있으나 평화안보대학원은 8학점 이내로 조정하여 운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특수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경영·산업대학원을 경영·행정·산업대학원으로 명칭 변경하며,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경영·산업대학원에 소속된 재적생은 경영·행정·산업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평화안보대학원 석사과정 군사학과를 상담심리학과로 명칭 변경하며,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군사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상담심리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③ (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사회복지학과, 산림과학과, 박사과정에 사회복지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학과간협동과정 박사과정에 동서의료공학과, 경영·행정·산업대학원 석사과정에 행정학과를 신설하며 신입생은 2009학년도 전기부터 선발한다.

④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입학정원은 경영·산업대학원과 교

육대학원에서 각 5명을 조정하여 총 51명으로 운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한방의료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를 신설하며 신입생은 2010학년도 전기부터 선발한다.

②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간 협동과정 석사과정의 여성학과, 동서의료공학과를 폐지한다. 다만, 이 학칙 개정 시행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은 학과폐지에도 불구하고 졸업시까지 학과 및 학위명칭 등은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③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1. 2009학년도 후기 입학정원 조정 특수대학원 평화안보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5명,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사 과정에서 5명을 조정하여 총 25명으로 운영한다.

2. 2010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특수대학원 사회복지정책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명, 학과간협동과정 석사과정에서 2명,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서 5명을 조정하여 총 40명으로 운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사회복지정책대학원 학점기준에 대한 변경조치)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학점기준 변경, 학위과정의 수료인정, 학위수여자격은 2010학년도 전반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경영·행정·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학위종별에 대한 변경조치) 경영·행정·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학위종별 변경은 2009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평화안보대학원 상담심리학과 학위종별에 대한 변경조치) 평화안보대학원 상담심리학과 학위종별 변경은 2009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계약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대학원 석사과정에 계약학과(응용전자공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모집은 2010학년도 후기부터 선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대학원 석사과정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경

영·행정·산업대학원 석사과정에 무역학과, 보건관리학과를 신설하고,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학과에 평생교육전공을 신설하며, 신입생 모집은 2011학년도 전기부터 선발한다.

②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2조, 제53조에 의하여 경영·행정·산업대학원 석사과정 회계학과, 경제학과, 환경공학과를 폐지한다. 다만,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은 학과 폐지에도 불구하고 졸업시까지 학과 및 학위명칭 등은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2조, 제53조에 의거하여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교육학과를 신설하고, 경영·행정·산업대학원 석사과정에 언론홍보학과를 신설하며, 신입생모집은 2012학년도 전기부터 선발한다.

②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2조, 53조에 의거하여 경영·행정·산업대학원 석사과정 경영정보학과를 폐지하고,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학과 과학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을 폐지한다. 다만,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은 학과 폐지에도 불구하고 졸업시까지 학과 및 학위명칭 등은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2학년도 전기 입학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명, 석사과정에서 12명을 조정하여 총 40명으로 운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산업디자인학과를 디자인학과로 명칭변경 하며,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산업디자인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디자인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제약공학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환경공학과를 신설하고 2012학년도 전기부터 선발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05, 2012.5.14)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보건관리학과 신설, 석사과정 신에너지·자원공학과를 신설하고 2012학년도 후기부터 선발한다.

②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3명 감축,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과정 5명 감축, 경영·행정·산업대학원석사과정 2명을 감축하여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10명을 증원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920, 2012.12.17)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2조, 제53조에 의거하여 대학원 석사과정에 식품영양학과를 신설하고, 경영·행정·산업대학원 석사과정에 경영정보학과를 신설하며, 신입생 모집은 2013학년도 전기부터 선발한다.
②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과정을 5명 감축하고, 사회복지정책대학원을 5명 증원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0, 2014.1.24)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44, 2014.4.3)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정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4조 입학정원은 2015학년도 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2조, 제53조에 의거하여 경영·행정·산업대학원 석사과정에 법학과를 신설하며, 신입생 모집은 2015학년도 전기부터 선발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05, 2015.05.19)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과정에 계약학과(안보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모집은 2015학년도 후기부터 선발한다.

부칙 (기획예산부- , 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4조 입학정원은 2017학년도 전기부터 적용한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12명을 감축하여 25명으로, 학과간협동과정(박사)는 1명을 감축하여 2명으로, 석사과정은 16명을 감축하여 29명으로 운영한다. 사회복지정책대학원은 5명을 감축하여 30명으로, 경영·행정·산업대학원은 17명을 증원하여 30명으로, 교육대학원은 45명을 감축하여 10명으로,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은 4명을 감축하여 55명으로, 보건과학대학원은 37명을 증원하여 37명으로 운영한다.

제3조(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2조, 제53조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임상병리학과를 신설하며, 신입생 모집은 2017학년도 전기부터 선발한다.

제4조(대학원 및 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2조, 제53조에 의거하여 보건과학대학원을 신설하고 석사과정에 헬스케어매니지먼트학과, 자연치유학과를 신설하며, 신입생 모집은 2017학년도 전기부터 선발한다.

제5조(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2조, 제53조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응용전자공학과(계약학과)를 폐지한다. 다만,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은 학과 폐지에도 불구하고 졸업시까지 학과 및 학위명칭 등은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칙 (대학원교학부-657, 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52조, 제53조에 의거하여 경영·행정·산업대학원을 경영·행정·산업·법학대학원으로 명칭 변경하며,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경영·행정·산업대학원에 소속된 재적생은 경영·행정·산업·법학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제3조(학과신설 및 명칭변경 따른 경과조치) ①학칙 제52조, 제53조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보건관리학과, 교육대학원에 한국어교육전공, 청소년교육전공, 경영·행정·산업·법학대학원에 MICARE융합관광학과(학과간협동과정)를 신설하며, 신입생 모집은 2018학년도 전기부터 선발한다.

②일반대학원(석사, 박사) 국어국문학과(국문학전공, 국어학전공)를 한국어문학과(한국문학전공, 한국어학전공)로, 대학원(석사) 회계정보학과를 회계학과로, 경영·행정·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를 부동산경영학과로 명칭 변경하며,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일반대학원(석사, 박사) 국어국문학과, 회계정보학과, 경영·행정·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일반대학원(석사, 박사) 한국어문학과, 회계학과, 경영·행정·산업·법학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제4조(학과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경영·행정·산업대학원 보건관리학과를 보건과학대학원으로 소속변경하며,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경영·행정·산업대학원 보건관리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보건과학대학원 보건관리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제5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보건과학대학원 헬스케어매니지먼트학과를 폐지한다.

부칙 (대학원교학부-297, 2018.05.30.)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과 경영·행정·산업·법학대학원 석사과정에 국립공원학과(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 모집은 2018학년도 후기부터 선발한다.

부칙 (대학원지원팀-953, 2018.10.26.)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영·행정·산업·법학대학원과 보건과학대학원에 소속된 재적생은 사회융합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제3조(학과소속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

공에 소속된 재적생은 사회융합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41, 2019.05.07.)

이 학칙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09, 2019.10.08.)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학원 박사과정에 생명과학과를 신설하며, 신입생 모집은 2020학년도 전기부터 선발한다.

부칙 (기획예산팀-629, 2020.09.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연한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은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제3조(사회융합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융합대학원 석사과정 자연치유학과를 폐지한다. 다만,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 시까지 학과 및 학위 명칭 등은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00, 2021.02.16.)

이 학칙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58, 2021.04.28.)

이 학칙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13, 2021.09.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의 행정학과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칙 (기획예산팀-678, 2021.12.22.)

이 학칙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40, 2022.06.13.)

이 학칙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459, 2022.10.17.)

이 학칙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863, 2023.04.13.)

이 학칙은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945, 2023.04.21.)

이 학칙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871, 2023.09.0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공포 후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농축산 환경자원학과”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석·박사과정 동물생명자원학과”의 학과 명칭 및 학위명 등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기획예산팀-203, 2024.01.18.)

이 학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848, 2024.04.01.)

이 학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026, 2024.04.24.)

이 학칙은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274, 2024.10.24.)

이 학칙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761, 2024.12.17.)

이 학칙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1, 2025.01.0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연한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은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173, 2025.05.14.)

이 학칙은 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611, 2025.07.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학기 조항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은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별표1] (변경 2012.12.17.) (개정 2016.10.10., 2017.12.20., 2019.5.7., 2019.10.8., 2021.4.28., 2021.9.23., 2021.12.22., 2022.10.17., 2024.4.21., 2024.1.18., 2024.12.17., 2025.1.6., 2025.7.28.)

◎ 일반대학원 학과 및 입학정원

과 정	계 열	학 과	입 학 정 원
박 사	인문사회	한국어문화학과	62
		법학과	
		공공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경영학과	
		보건관리학과	
		국가안보융합학과	
	자연과학	응용식물과학과	
		농림축산융합학과	
		생명과학과	
		환경시스템계획학과	
	공 학	토목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환경공학과	
박 사 (학과간협동과정)		동서의료공학과	
박 사	예 · 체능	체육학과	
	의 학 계	한의학과	
박 사(첨단) (학과간협동과정)	인문사회	지능정보융합레저학과	5
	공 학	스마트시티공학과	5
석 사	인문사회	한국어문화학과	32
		영어영문학과	
		법학과	
		공공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자연과학	보건관리학과	
		응용식물과학과	
		산림과학과	
		농림축산융합학과	
		생명과학과	
		응용통계학과	
		간호학과	
		제약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임상병리학과	
	공 학	환경시스템계획학과	
		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디지털헬스케어학과	
		신에너지 · 자원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예 · 체능	체육학과	
		디자인학과	
	의 학 계	한의학과	

[별표1의 2] (개정 2015. 05.19, 2016.10.10., 2018.05.25., 2018.10.19., 2022.10.17)

◎ 계약학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 일반대학원 학과 및 입학정원

과 정	계 열	대학원명	학 과	입 학 정 원
박 사	자연과학	대학원	국립공원학과	3

◆ 특수대학원 학과 및 입학정원

과 정	계 열	대학원명	학 과	입 학 정 원
석 사	인문사회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안보학과	10
석 사	자연과학	사회융합대학원	국립공원학과	10

[별표1의 3] (신설 2022.10.17.) (개정 2024.1.18., 2025.1.6.)

◎ 외국인 유학생 집중이수제 운영학과

◆ 일반대학원 학과

과 정	계 열	대학원명	학 과	비 고
석 사 (학과간협동과정)	인문사회	대학원	국제경영학과	정원외
박 사 (학과간협동과정)	인문사회	대학원	국제경영학과	정원외
석 사 (학과간협동과정)	인문사회	대학원	국제교육학과	정원외
박 사 (학과간협동과정)	인문사회	대학원	국제교육학과	정원외
석 사 (학과간협동과정)	공학	대학원	컴퓨터소프트웨어 공학과	정원외
석 사	예·체능	대학원	생활스포츠학과	정원외
석 사	의학	대학원	한의학학과	정원외

[별표2] (변경 2012.12.17., 2014.4.3.) (개정 2016.10.10., 2017.12.20., 2018.10.19., 2021.2.16., 2021.4.28., 2021.9.23., 2021.12.22., 2022.6.13., 2022.10.17., 2024.4.1.)

◎ 특수대학원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과정	대 학 원	계 열	학 과	입 학 정 원	
석 사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20	
석 사	사회융합대학원	인문사회	공공행정학과	51	
			법학과		
			경영학과		
			부동산경영학과		
			언론홍보학과		
			관광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영정보학과		
			한국어교육학과		
			보건관리학과		
			MICARE융합관광학과		
석사 (학과간협동과정)			자연과학		언어치료학과
석사					외식조리학과
		공학			토목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석 사	평화안보·상담심리 대학원	인문사회	안보학과	55	
			상담심리학과		
석 사	교육대학원	인문사회	교육학과	20	
			-.교육행정전공		
			-.교육과정전공		
			-.평생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컴퓨터정보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진로진학상담전공		

[별표3] (변경 2012.12.17.) (개정 2017.12.20., 2018.05.25., 2019.10.8., 2021.4.28., 2021.9.23., 2021.12.22., 2022.10.17., 2024.4.21., 2024.1.18., 2024.12.17., 2025.1.6.)

◎ 일반대학원 수여학위명

학 과	석 사 학 위	박 사 학 위
한국어문화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공공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국제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국제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공학석사	-
생활스포츠학과	체육학석사	-
한 의 과 학 과	한 의 학 석 사	-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
국가안보융합학과	-	안보정책학박사 방위사업학박사
지능정보융합레저학과	-	지식경영학박사
산림과학과	산림과학석사	-
응용식물과학과	응용식물과학석사	응용식물과학박사
농림축산융합학과	농업생명과학석사	농업생명과학박사
환경시스템계획학과	환경시스템계획학석사	환경시스템계획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응용통계학과	이학석사	-
제약공학과	이학석사	-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환경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컴퓨터정보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동서의료공학과	-	공학박사
스마트시티공학과	-	공학박사
디지털헬스케어학과	공학석사	-
신에너지·자원공학과	공학석사	-
반도체공학과	공학석사	-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디자인학과	디자인석사	-
한 의 학 과	한 의 학 석 사	한 의 학 박 사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석사	보건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
임상병리학과	이학석사	-
국립공원학과	-	공원관리학박사

※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박사학위 종별에 따른다.

◎ 특수대학원 수여학위명 (변경 2012.12.17.) (개정 2016.10.10., 2017.12.20., 2018.05.25., 2018.10.19., 2019.10.8., 2021.2.16., 2021.4.28., 2021.9.23., 2022.6.13., 2022.10.17)

대 학 원 명	학 과	전 공	수 여 학 위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학)
사회융합대학원	공공행정학과		행정학석사(행정학)
	법학과		법학석사(법학)
	경영학과		경영학석사(경영학)
	부동산경영학과		부동산학석사(부동산학)
	언론홍보학과		언론홍보학석사(언론홍보학)
	무역학과		무역학석사(무역학)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석사(보건학)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석사(관광경영학)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경영정보학)
	MICARE융합관광학과		경영학석사(외식조리경영학전공, 레저관광학전공, MICE경영학전공)
	국립공원학과		공원관리학석사(공원관리학)
	한국어교육학과		문학석사(한국어교육학)
	언어치료학과		이학석사(언어치료학)
	외식조리학과		이학석사(외식조리학)
	토목공학과		공학석사(토목공학)
	소방방재학과		공학석사(소방방재학)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안보학과		안보정책학석사(안보학)
	상담심리학과		문학석사(상담심리학)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학석사(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학석사(교육과정)
		평생교육	교육학석사(평생교육)
		국어교육	교육학석사(국어교육)
		영어교육	교육학석사(영어교육)
		환경교육	교육학석사(환경교육)
		체육교육	교육학석사(체육교육)
		컴퓨터정보교육	교육학석사(컴퓨터정보교육)
		영양교육	교육학석사(영양교육)
		진로진학상담	교육학석사(진로진학상담)

[별지 1] (개정 2019.5.7.)

학술학위(일반대학원 - 석·박사)

석(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과 석(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심사에 통과하여 ○○○학 석(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상지대학교 대학원장 ○ ○ ○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 ○ ○ 학 석(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상지대학교 총 장 ○ ○ ○ 박사 ○ ○ ○

학위번호 :

[별지 2] (개정 2016.10.10., 2017.12.20., 2018.10.19., 2019.5.7.)

전문학위(특수대학원 - 석사)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사회복지정책, 사회융합, 평화안보·상담심리, 교육대학원에서 ○○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심사에 통과하여 ○○학 석사(○○학)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 사회융합, 평화안보·상담심리, 교육대학원장

○ ○ ○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 ○ 학 석사(○ ○학)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상지대학교 총 장 ○ ○ ○ 박사 ○ ○ ○

학위번호 :

[별지 3] (개정 2016.10.10., 2017.12.20., 2018.10.19., 2019.5.7.)

전문학위(특수대학원 - 수업석사)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사회복지정책, 사회융합, 평화안보·상담
심리, 교육대학원에서 ○○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 석사(○○학)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를 인정함.

년 월 일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 사회융합, 평화안보·상담심리, 교육대학원장

○ ○ ○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 ○ 학 석사(○ ○학)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상지대학교 총 장 ○ ○ ○ 박사 ○ ○ ○

학위번호 :

[별지 4]

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 제 호

학 위 기

국 적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인류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내었기에)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상지대학교 대학원장 ○○○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명예○○○학 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상지대학교 총 장 ○○○ 박사 ○ ○ ○

학위번호 :

[별지 5] (신설 2024.01.18.)

학술학위 및 전문학위(연구실적석사)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정책, 사회융합, 평화 안보·상담심리, 교육대학원에서 ○○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 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학)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상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정책, 사회융합, 평화안보·상담심리, 교육대학원장		
○ ○ ○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 ○ 학 석사(○ ○학)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상지대학교	총 장	○ ○ ○ 박사 ○ ○ ○
학위번호 :		